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12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3.

다.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제공자¹⁾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신설).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3조 제2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1)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8. (생략)	<u>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u> 제73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u> 3. ~ 8.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함.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딥페이크 정보를 명예훼손, 성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²⁾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음³⁾.
-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⁴⁾.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⁵⁾에서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2)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3)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4) 4.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범죄 행위를 탐지, 방지,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콘텐츠가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 유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는 그러한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를 저작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방해하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후략]

5) 2024.12.26. 본회의 의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⁶⁾.

- 개별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⁷⁾.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534호, 2025.6.4. 시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⁸⁾,

6)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7)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딥페이크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런데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를 편집하여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둘째,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전체를 표시의무의 대상으로 하는데,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또는 예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방송·광고 등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정도 또한 단순 보정부터 실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진·영상등의 구현까지 다양한 만큼,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령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까지도 표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 콘텐츠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알 수 있는 경우까지도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표시의무가 이용자의 몰입을 저해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이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법익 침해 및 사회적 영향,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932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정보제공자의 의무)**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 단순 재유통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편집하는 등 가상 정보임을 알 수 있었던 자를 의무자로 한정하고,

글·문자 생성에도 인공지능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표시제 적용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를 고려하되, 미용 목적의 경미한 활용 또는 가상정보라는 사실이 명확한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표시 필요성이 낮은 정보도 있으므로, 표시의무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정보에 대한 직권표시나 접속제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시를 삭제·훼손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벌칙)**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표시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의 기술중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모든 딥페이크 정보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보제공자에는 일반 개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으므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 산업계 등에서 표시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도 다수 발의 중으로,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단순히 게시하는 경우 등 다수의 경우에 정보 제공자가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정보 자체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단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예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표시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콘텐츠나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인공지능 기본법에 관련 의무규정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표시의무 등을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의무 대상 정보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구체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범위로 제한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영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표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의 경우 악의를 가진 이용자가 이를 제거하고 이용할 가능성, 표시 범위나 방법에 대한 기술적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인공지능 생성물을 공유받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제재가 우려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입법 규제보다는 기존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규제 관련 조항은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방송협회**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표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지·음악·자막 등 콘텐츠의 여러 요소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제작한 콘텐츠와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도구로 활용된 콘텐츠의 분리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의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제이티비씨(주)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생성물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나 규제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우려가 있으며, 「방송법」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⁹⁾ 등 기존 법률이 유사한 취지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규제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9)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